

2. 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조정의 권고
3. 법 제37조의3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의 요구
4. 그 밖에 신고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

② 물류신고센터의 장은 국토교통부 또는 해양수산부의 물류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.

[본조신설 2019. 3. 12.]

[종전 제27조의2는 제27조의4로 이동 <2019. 3. 12.>]

제27조의3(비밀누설 등의 금지) 물류신고센터와 관련한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(제51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사람을 포함한다)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.

[본조신설 2019. 3. 12.]

제27조의4(물류사업별 우수물류기업 인증의 주체와 대상)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사업별 인증의 주체와 대상은 별표 1의2와 같다.

[본조신설 2015. 12. 22.]

[제27조의2에서 이동 <2019. 3. 12.>]

제28조(인증우수물류기업에 대한 점검) ①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(이하 "인증우수물류기업"이라 한다)가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요건을 유지하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(이하 "공동부령"이라 한다)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마다 점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12. 22.>

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우수물류기업이 법 제38조제4항의 요건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점검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15. 12. 22.>

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40조에 따른 우수물류기업 인증심사 대행기관(이하 "심사대행기관"이라 한다)으로 하여금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5. 12. 22.>

[제목개정 2015. 12. 22.]

제29조(심사대행기관의 지원업무 등) ① 법 제40조제1항제4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업무"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5. 12. 22.>

1.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인증(이하 "인증"이라 한다)의 심사방법, 심사절차 등 인증업무에 대한 세부규정 마련
2. 인증심사 계획 및 제28조에 따른 점검 계획의 수립 및 결과 보고
3. 인증심사위원의 관리
4. 인증제도 및 인증우수물류기업에 대한 홍보
5. 인증제도에 대한 연구
6. 그 밖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업무

②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심사대행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5. 12. 22.>

[제목개정 2015. 12. 22.]

제30조(인증우수물류기업 및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대한 지원) ① 법 제42조에 따라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스스로 운영·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법 제36조제2항제1호에 따른 물류시설 우선입주대상자나 그 밖의 자보다 인증우수물류기업 또는 법 제60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(이하 "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"이라 한다)를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7. 3. 29.>